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4362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김태원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7. 8.

판결 선고 2020. 8. 26.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525336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체결된 2018. 6. 27.자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C, 보증원금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26.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A이 2017. 6. 27. D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의 구매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다. A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8. 5. 28. 이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결국 대출 만기가 지닌 후에도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8. 10. 29. D은행에 456,777,272원(원금 449,987,130원 + 이자6,790,1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8. 10. 29. 위 대위변제금 중 13,560원을 회수함으로써, 그 잔존대위변제금은 456,763,712원(456,777,272원 - 13,560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3원($13,560\text{원} \times 10\% \times 1(2018. 10. 29. \sim 2018. 10. 29.) \div 365$, 원 미만버림)이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670,660원($450,000,000\text{원} \times 1.6\% \times 34(2018. 9. 25. \sim$

2018. 10. 28.) ÷ 365, 원 이하 버림}이다.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429,497원이다.

마.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A,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6. 27. 확정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6. 29. 접수 제57263호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2018. 7.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32,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위 부기등기는 2018. 7. 30.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1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에 대하여 457,869,872원(잔존대위변제금456,763,712원 + 일부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3원 + 미수추가보증료 676,660원 +법적절차비용 429,497원) 및 그 중 456,763,712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2. 2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아래의 나. 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채권양도계약이 A의 보증사고 이전인 2018. 6. 27.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7. 6. 26.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고, 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대출채무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각종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보증사고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A의 대출금 상환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이상,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8. 6. 27. 당시 A은 3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이에 반해 원고에 대한 위 457,869,872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비롯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166,785,000원 상당의 채무, J은행에 대한 45,997,000원 상당의 채무, K은행에 대한 44,500,000원 상당의 채무, L에 대한 28,062,000원 상당의 채무, M에 대한 24,913,000원 상당의 채무, N에 대한 13,308,000원 상당의 채무, O에 대한 29,995,000원 상당의 채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90,000,000원 상당의 채무, P에 대한 109,591,000원 상당의 채무, Q에 대한 178,991,000원 상당의 채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171,792,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채무들만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8. 6.27. 당시 A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바, A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 채무자는 A의 재무상태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의 재무상태표에는 2017. 12. 31.을 기준으로 한 A의 자산총계가 3,259,322,60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894,266,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A의 자산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산 가액의 기준은 2017. 12. 31.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는 6개월 가량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D은행에 4억 5,000만 원이 넘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점, A은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점, A이 특별히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현저히 부족하게 한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A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R(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2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액면금 280,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배서인 중 하나인 A에 게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그 변제를 위하여 A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7. 11. 11. 발행되었고, A이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A,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및 소외 회사의 순차 배서를 거쳐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A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 보이지 않으므로,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자체를 믿을 수 없고, A과 사이에 채권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선의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2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하는 J은행 계좌내역(을 제6호증)에는 'U'의 계좌에서 2017.6.부터 2017. 10.까지 산발적으로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돈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된 사실, 위 돈이 대여금인 사실, 위 돈의 대여자가 피고인 사실 및 R가 위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외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외에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돈의 변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돈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등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현저히 반한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 이후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차입한 122,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8. 6. 15. 자차용금 변제 각서와 같은 날 발행된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서가 항소심인 이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피고의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는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 발행일자에 맞추어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④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한 돈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고, 위 돈을 대여할 당시에 변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대여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아직 소외 회사로부터 90,000,000원(= 122,000,000원 - 32,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과 별도로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는 위 대여한 돈을 자신의 돈과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돈 중 일부를 친척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돈을 합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였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대처는 더욱이 납득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A 이후에 소외 회사를 제외하고 2인의 다른 배서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른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생략한 채 제2배서인인 A에게만 어음금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가 A 이후의 배서인인 주식회사 T나 S 주식회사에 대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⑦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과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와 A 사이에 실제로 위 계약서들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계약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고 명의의 부기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취소 후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액은 이 사건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채권액인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인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D미, 판사 김우현

근저당권 목록

아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2017. 5. 19. 접수 제44492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 명의의 근저당권.

아 래

1. 양주시 H 공장용지 1328㎡
2. 양주시 I 답 1705㎡. 끝.